업 무 협 약 서

㈜단계자동차공업사(이하"갑"이라 함)와 KT(이하"을"이라함)는 KT 소유 차량 및 임·직원의 소유차량과 그 가족의 차량에 대한 일체의 정비·점검·검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대 서비스차원에서의 발생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을 할인하여 "을"의 이해관계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을"은 "을"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적극적 홍보로 "갑"에게 업무의 원할함을 돕는것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협약은 "을"당사자의 소유차량 및 "을"의 이해관계인 및 그 가족 소유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을 (2007년 1월 15일 부터 2008년 1월 14일) 으로 하되 협약기간 만료전까지 "갑""을"쌍방간의 해지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적용범위)

"갑"은 "을"에게 자동차 일체의 정비 및 점검,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비용처리)

"갑"은 "을" 당사자의 소유차량과 "을"의 이해관계인 및 그 가족 소유차량에 대하여 일체의 정비·점검·검사에 대하여 들어가는 제반모든 비용중에서 **"부품비를 제외한 공임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 (부가치세별도)"**을 적용하여 비용처리하기로 한다.
(단, 보험대상 차량은 제외한다.)

제6조 (관리허용)

"갑"은 "을"의 소유차량 및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 소유차량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인적사항)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차량 정비,점검,검사의 업무에만 활용하기로 한다.

제7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갑"은 "을"로 부터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을"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신의성실에 준하는 상도를 반하여 "갑"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기타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조의 협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과"을"은 각각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되. 가능한 한 해지 발생사유가 발생시는 상대방에게 사전통보를 하여 협의후 처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일)

이 협약은 2007년 1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작성부수)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 통씩을 소지 보관한다.

2007 . 1 . 15

갑: 224-81-35671
주식회사단계
자동차공업사 임 경 석
강원 원주시 단계동 664번지
서비스외2 자동차종합수리외2

"을" 원주시 관설동 1426번지
KT노동조합강원지방본부
위원장 권 혁 웅